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12회 임시회(2017.0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운 영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 용 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2017년 05월 08일(월), 서종수 의원 외 6명

3. 위원회 회부일자

○ 2017년 05월 08일(월)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○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

5. 제정이유

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·외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 되고,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함.

6. 주요내용

○ 의원의 국내·외 여비 지급기준을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맞춰 조정함. (안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)

7. 검토결과

○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초에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중 국내·외 숙박비 상한액(46,000원→서울특별시 70.000원, 광역시 60,000원, 그 밖의 지역은 50,000원)이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, 국외 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(의장·부의장 : 가등급 166달러→223달러, 나등급 120달러→160달러, 다등급 92달러→130달러, 라등급 79달러→85달러, 의원 : 가등급 145달러→176달러, 나등급 95달러→137달러, 다등급 70달러→106달러, 라등급 62달러→81달러)으로 조정되었음.

○ 이에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근거 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여비를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.